

2021년도 제2회 추경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396
----------	-----

제출년월일 : 2021. . .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21년도 제2회 추경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고 평창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한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타수입 및 예치금으로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단위:천원)

기금명	계획액	기정계획액	비교증감
합계(7건)	7,117,526	6,907,526	21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51,451	1,051,451	0
체육진흥기금	1,506,155	1,506,155	0
식품진흥기금	149,905	149,905	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60,240	60,240	0
재난관리기금	2,440,375	2,440,375	0
옥외광고발전기금	120,339	120,339	0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789,061	1,579,061	210,000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